

奎章閣 소장 『經書正音』에 대하여*

On the Purpose of *Gyeongseojeongeum* in the Gyujianggak Collection

정 승 혜 (Chung, Seunghye)**

◁ 목 차 ▷

1. 緒 論	3.1 규장각 소장 『經書正音』의 書誌
2.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과 편찬 시기	3.2 『경서정음』의 活字 - 經書正音字
2.1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	4. 『經書正音』의 語音
2.2 『경서정음』의 편찬 시기	5. 結 語
3. 奎章閣 소장 『經書正音』의 書誌	<참고문헌>

< 초 록 >

이 논문은 규장각 소장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과 서지 정보, 語音의 특징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과 편찬 시기’에서는 譯科 漢學에서 사용된 科試書와 經書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은 ① 經筵 시에 經書의 발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② 중국과 통교할 때 經書의音を 바르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은 초기로부터 『經書』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데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내 英祖대에 이르러 『經書正音』을 처음 편찬하였고, 正祖대에 중간하였다. 특히 『周易正音』은 1800년에 역관 金益瑞가 초판본을 만들었음을 밝혔다.

둘째, 제3장 ‘奎章閣 소장 『經書正音』의 書誌’에서는 규장각에 소장된 『경서정음』의 현황과 서지사항을 정리하였다. 규장각 소장본은 ‘경서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3권이 있고, 활자본과 목판본을 각각 따로 소장하고 있다.

셋째, 제4장 ‘『經書正音』의 語音’에서는 한어음을 표기하는 한글 전사를 살펴보았는데, 좌측음은 물론 우측음까지도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수립된 한글 전사 체계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본래의 목적이었던 한자음의 현실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要語: 『經書正音』, 譯學, 經學, 奎章閣, 司譯院

* 이 논문은 2017년 12월 1일 韓國經學學會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논문이다. 발표 논문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수원여자대학교 비서과 교수(cshblue@chol.com)

접수일: 2018년 11월 19일 최초심사일: 2018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23일
서지학연구, 제76집, 289-305,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289>)

<ABSTRACT>

This is a study on the purpose of the publication of *Gyeongseojeongeum* in the Gyujanggak collection as well as its biographical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pter 2 surveys the significance of the test texts and the Confucian classics which were used in the Sino-Korean studies as a category for the translator program. The purpose of *Gyeongseojeongeum* was to make sure that ① examinees effectively pronounce words when reading the Confucian classics for the contests and that ② the relevant officials correctly pronounce the sounds of the words in the Confucian classics and thereby ensure their effective communication during diplomatic exchanges with China. Since its early days, the Joseon Dynasty was continuously interested in making correct pronunciations about the Confucian classics, which led the publication of *Gyeongseojeongeum* during King Yeongjo's reign and then to a reprint during King Jeongjo's reign. It lets it be known for the first time that *Juyeokjeongeum* in particular had its first edition made by translator Kim Ik-seo in 1800.

Second, Chapter 3 summarizes the current status of *Gyeongseojeongeum* in the Gyujanggak collection. The three copies in the Gyujanggak collection are bound under the name of *Gyeongseojeongeum*, and the movable type printing and the woodblock printing editions are also available in the collection.

Third, Chapter 4 surveys the Korean transliteration that describes the sounds of the Chinese words but fails to reflect the actual pronunciation of the Chinese words, which is its original purpose, as not only the left sounds but the right sounds almost faithfully follow the Korean transliteration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in *Hongmujeonghunyeokhun* (1455).

Key words: *Gyeongseojeongeum*, translation studies, the Confucian classics, Gyujanggak, Sayeokwon

1. 緒論

經學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정신적 지주가 된 학문이고, 譯學은 대외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譯官의 養成 및 外國語 教育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학문이다. 일견 經學과 譯學은 서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經書正音』은 이 둘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주도로 ‘司譯院’이라고 하는 관청을 두고 ‘四學’¹⁾을 통해 체계적으로 외국어를 교육하였다. 사역원의 譯官을 선발하는 시험인 譯科는 譯學書, 즉 외국어 교재의 편찬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역원 역관의 선발에 필요한 科試書가 곧 역학서였기 때문이다.

譯科에는 初試 [1차 시험]와 覆試 [2차 시험]가 있었는데, 역과 초시인 鄉試는 사역원이 있는 평안·황해도에서 관찰사가 실시하였다. 시험과목은 『老乞大』 『朴通事』와 같은 전문서·『經書』·『經國大典』을 필수과목으로 하여 성적은 通, 二分, 略, 一分, 粗, 半分으로 계산하여 分數(分數)가 많은 자를 선발하였다. 『경국대전』과 『속대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과 한학의 과시서와 시험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역과 한학의 과시서와 시험 방법

法典	試驗方法		譯科初試 科試書	額數	譯科複試 科試書	額數
經國大典 (1485년, 成宗 16)	講書	臨文	四書 (論語, 孟子, 中庸, 大學)	漢學 23人 (司譯院錄名試取 ²⁾) 漢學鄉試 黃海道 7人 平安道 15人 (觀察使定差使員 錄名試取)	同初試 (願講五經 少微通鑑 宋元節要者 聽)	13人
		背講	老乞大, 朴通事, 直解小學		同初試	
	譯語	臨文	並翻經國大典			
續大典 (1746년, 英祖 22)	講書	臨文	四書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式年(見大典) 增廣同大增廣則 漢學蒙學倭學 各加四人	左同	式年 (見大典) 增廣同 大增廣則漢學蒙 學 淸學各加二人
		背講	老乞大, 朴通事, 伍倫全備(新增)(中間代)		同初試	
	譯語	臨文				

- 1) 四學은 漢學, 蒙學, 淸學, 倭學을 말한다.
- 2) 취재(取才)는 과거와는 별도로 하급관리를 뽑기 위해 실시하던 임용시험이다. 잡학생도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다음 기술관 취재시험이나 잡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기술관 취재는 사맹삭(四孟朔) 취재(1·4·7·10월의 1일)가 원칙이었다. 사맹삭취재가 처음 실시된 것은 태종 16년(1416) 3월초이고, 그 이전에는 사중삭(四仲朔) 취재(2·5·8·11월의 1일), 사계삭(四季朔) 취재(3·6·9·12월의 1일)가 시행되었다. 시험관은 해당 관청의 제조와 예조당상관(당상관이 유고일 때는 낭관)이 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공서, 『경서』, 『경국대전』 등이었다. 취재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잡학생도, 잡과를 합격한 다음 해당 관청에 임시로 배속되어 있는 권지, 전·현직 기술관 등이었다. 취재성적은 잡과와 마찬가지로 분수로 계산하는데 10분 이상을 1등, 6분 이상을 2등, 3분 이상을 3등으로 하여 1·2등은 서용하고 3등은 서용하지 않았다. 도목정사(인사행정)에는 취재성적이 우선이었으나

위의 <표 1>을 보면 조선 초기부터 譯科의 고시 과목의 하나로 四書를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四書는 譯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奎章閣에는 유교 경전의 원문에 각 글자마다 한글로 두 종류의 중국한자음[正音과 俗音]을 달아놓은 『경서정음』 8종이 전한다. 이들은 司譯院의 譯學書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본고는 규장각에 소장된 『經書正音』을 대상으로 하여 편찬 목적과 시기 및 서지 정보, 언어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을 규장각본으로 삼은 이유는 현전하는 『경서정음』 가운데 가장 선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과 편찬 시기

2.1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

『世宗實錄』 세종 8년(1426) 병오 8월 16일(정축)의 기사에 사역원 관리들의 시험고과 제도에 대해 예조에서 올린 내용이 보인다.

예조에서 사역원(司譯院) 첩문(牒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앞서 사맹삭(四孟朔) 취재(取才)를 삼관(三館)의 예에 따라 『사서(四書)』·『시(詩)』·『서(書)』·『고금통략(古今通略)』·『소학(小學)』·『효경(孝經)』·『전한서(前漢書)』·『후한서(後漢書)』·『노재대학(魯齋大學)』·『노갈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 등의 서책을 돌려 가면서 책을 앞에 펼쳐 놓고 강독하여 시험하였는데, 지난 경자년에는 모두 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경으로 가는 호송(護送)·압송(押送) 등의 일이 무시로 있어, 사신관(使臣館)의 통사(通事)가 혹은 여러 달을 두고 사행(使行) 길에 나가므로 읽고 익힐 겨를이 없고, 또 각기 나이가 장년(壯年)이라서 책을 등지고 암송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니, 청하건대 『소학』·『노갈대』·『박통사』 등의 서적을 사맹삭으로 나누어 외게 하고, 그 나머지의 모든 서적은 전례에 따라 책자를 앞에 펼쳐 놓고 시험 강독하게 하고, 또 역학(譯學)의 임무란 언어가 위주이니, 아울러 이를 시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³⁾

또 세종 16년(1434) 갑인 2월 25일(계유)의 기사에는 漢學 勸獎에 대한 조건들에 대하여 禮曹에서 건의한 내용이 보인다.

전공에 따라 근무일수·업무실적·수업일수가 고려되기도 하였다. 기술관취재에 합격한 사람은 체아직을 받았다(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호(2002), 295 참조).

3) 『세종실록』 세종 8년(1426) 병오 8월 16일(정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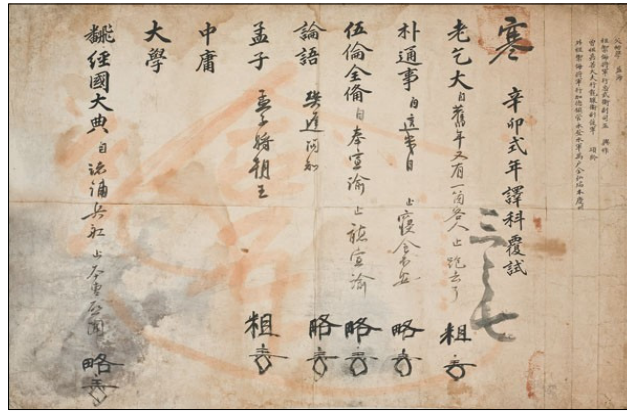
“禮曹據司譯院牒啓: “在前四孟朔取才, 依三館例, 以四書、詩、書、古今通略、小學、孝經、前·後漢、魯齋大學、老乞大、朴通事, 周而復始, 臨文講試, 去庚子年, 並令背誦. 然因赴京護送押送無時, 使臣館通事, 或累朔出使, 讀習無暇, 且各年壯, 未易背誦. 請『小學』、『老乞大』、『朴通事』等書, 分爲四孟朔背誦, 其餘諸書, 依前例臨文試講. 且譯學之任, 言語爲大, 并試之.” 從之.”

예조에서 사역원(司譯院)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한학(漢學)의 권장에 대한 조건을 아뢰었다.
(중략)

- 『직해소학(直解小學)』·『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 등의 잡어(雜語)는 모두 한어가 근본으로 되어 있사오나, 다만 경서를 읽어 의리를 연구하는 것 등에는 전혀 외우고 익히지 않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경서와 통감(通鑑) 등의 여러 서적들을 그 의리는 추구해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음훈(音訓)의 정위(正僞)와 대의의 해설만을 시험하여, 예에 따라 분수를 주게 하고, 그 『직해소학』은 사맹삭(四孟朔)으로 나누어 하고, 『박통사』는 춘추 양등(兩等)으로 나누어 하고, 『노걸대』는 추동 양등(秋冬兩等)으로 나누어 하며, 매양 사맹삭을 당하여 취재할 때에, 한 가지의 글을 모두 외운 자에게 비로소 다른 책을 시험하게 하고, 『소학』을 배송(背誦)하는 자에게는 배수의 분수를 주되, 그 중에 나이가 이미 40이 넘어서 배송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강(臨講)을 허용하고, 이를 능숙히 읽는 자는 다만 조통(粗通)의 분수를 주고, 능숙하게 읽지 못하는 자는 다른 글을 시험하지 말도록 하며, 그 『노재대학(魯齋大學)』·『성제효경(成齋孝經)』 및 전한·후한 등의 글은 아울러 시험하지 못하게 하소서.⁴⁾

이 내용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경서의 경우, 역과 한학에서 깊은 내용보다는 음훈의 정위와 대의의 해설만을 시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은 乾隆辛卯式年(1771년, 英祖47년)의 譯科漢學覆試에 응시한 劉學基(1749-?)의 답안지(화봉문고 소장)이다.⁵⁾ 이 시험답안지는 譯科 漢學에서 해당 외국어 교재인 『老乞大』, 『朴通事』, 『五倫全備』 외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의 經書를 시험 보았으며, 이 시험에서는 『論語』와 『孟子』에서 각각 출제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乾隆辛卯式年(1771) 譯科覆試 유학기 답안지(화봉문고 소장)

- 『세종실록』 세종 16년(1434) 갑인 2월 25일(계유)조.
“禮曹據司譯院呈啓漢學勸勵條件: (中略) 一. 『直解小學』, 『老乞大』, 『朴通事』等雜語, 悉皆漢語根本, 但讀經書, 窮其義理, 全不誦習, 自今以後, 經書, 『通鑑』諸書, 不必義理窮問, 但式音訓正僞, 大義解說, 隨例給分. 其『直解小學』, 分爲四孟朔, 『朴通事』, 分爲春秋兩等, 『老乞大』, 分爲秋冬兩等, 每當四孟朔取才時, 一書皆誦者, 方試他書, 『小學』背誦者, 倍數給分. 其中年四十已過, 不願背誦者, 許令臨講, 其熟讀者, 只給粗通分數, 不能熟讀者, 勿試他書. 如『魯齋大學』, 『成齋孝經』, 『前』, 『後漢』等不緊之書, 不許并試.”
- 유학기는 3등11人 중 7번째로 『譯科榜目』에 실려 있다. 『역과방목』에 실린 내용을 보면, ‘字習如, 己巳生, 本漢陽漢學聰敏正憲知樞 父益海’라고 되어 있어, 한학 역관으로 정현대부(정2품)까지 올랐으며, 연소종민, 한학지주 등을 역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經書正音』의 편찬 목적은 한어[중국어] 역관들이 통역할 때 경서의 구절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日省錄)』 등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가 보인다.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병신 5월 15일(정사)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윤계겸(尹繼謙)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우리나라는 외진 바다 밖에 있기 때문에 중국(中國)과는 어음(語音)이 같지 않은데, 조빙(朝聘)·공헌(貢獻)으로 인하여 왕래(往來)가 빈번하므로 역학(譯學)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역원(司譯院)을 설치하여 그 일을 전담케 했고, 습독관(習讀官)을 두어 그 일을 익히게 했으며, 또 통사(通事)로서 중국 조정에 가는 자는 돌려가면서 골고루 가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등(三等)의 법을 세워 통사(通事) 가운데에서 정통(精通)하고 숙달(諳練)된 자를 선택하여 1등(等)을 삼고, 그 다음은 2등, 또 그 다음은 3등을 삼아, 경사(京師)에 갈 때에 1등은 통사(通事)에 적용시키고, 2등은 압물(押物)·압마(押馬)에 적용시키고, 3등은 타각(打角)에 적용시켜서 잘하고 못함이 서로 구제되고 공평하게 왕래할 수 있게 했으니, 사실은 훌륭한 법이었습니다. (중략) 또 중국은 우리나라를 예의(禮義)의 나라라 하여 사신(使臣)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학행(學行)을 겸비(兼備)한 선비를 골라서 보냅니다. 이번엔 왔던 기순(祁順)·장근(張瑾) 두 사신은 모두 중국의 명사(名士)들이어서 읍양(揖讓)을 하는 사이에 경서(經書)나 『사기(史記)』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 많았는데, 통사(通事)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사신(使臣)이 손바닥 위에 글자를 써서 보여주어야만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한 예의(禮義)의 나라로서 중국말(華語)에 능통하여 그 중간에서 제대로 주선할 만한 익숙한 선비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이는 매우 조정(朝廷)에 빛이 나지 않는 일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그 이미 제정한 법을 다시 천명하여 중국에 가는 사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사(通事)를 지정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그 등급에 따라 순번대로 데리고 가게 할 것이며, 또 연소(年少)한 문신(文臣)들을 널리 선발해서 중국말(漢訓)을 배우게 하여, 능한 자에게는 상(賞)을 주어 그 나머지 사람도 권장이 되게 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조정에서 사대(事大)하는 성의와 모화(慕華)의 뜻을 알게 하시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까.⁶⁾

중국은 우리나라를 禮義의 나라라 하여 使臣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學行을 겸비한 선비를 골라서 보냈는데, 揖讓을 할 때 經書나 『史記』에 있는 말을 가지고 임금에게 아뢰는 일이 많았다. 이를 역관이 이해하지 못하여 사신이 손바닥 위에 글자를 써서 보여주어야 그 뜻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중국에 사신 갈 때 연소한 문신들을 선발해서 중국어[漢訓]를 배우게 하여 따라가게 했다는 것이다.

또, 『성종실록』 성종 24년 계축(1493) 9월 1일(임진)의 기사는 예조판서 성현(成俔, 1439~1504)이 문교와 예술에 대해 진술하는 장면이다. 성현은 역과 취재에서 經書와 『史記』를 강론할 때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漢語의 字訓을 묻지 않고, 『老乞大』·『朴通事』 등의 책은 다만 背誦만 하고

6) 『성종실록』 성종 7년(1476) 병신 5월 15일(정사)조.

“司憲府大司憲尹繼謙等上疏曰：(中略)我國邈在海表，與中國語音殊異，而朝聘貢獻往來陸續，以爲譯學不可以不重。故設司譯院以專其事，置習讀官以肄其業，又懼通事之赴朝者未得循環均往。故立三等之法，於通事之中，擇其精通(請) [語] 練者爲一等，其次爲二等，又其次爲三等，赴京之際，一等以擬之通事，二等以擬之押物押馬，三等以擬之打角，夫能否相濟，往來適均，實法之良者。(中略) 且中國以我東方禮義之國，凡遣使臣，必擇學行兼備之士。茲者出來祁、張兩使，皆中朝名流，揖讓之間，多以經史之語白上，而通事皆未能曉解，至有使臣畫字於掌上以示然後乃悟。噫！以堂堂禮義之國，而曾不得一傳給之士，能通華語者，周旋於其間哉？其無光於朝廷甚矣。伏望申其已立之法，使赴朝使臣毋得自占通事，各以其等輪次帶行，又選年少文臣，使習漢訓，能者賞之，以勸其餘，使中國知朝廷事大之誠慕華之意，不勝幸甚。”

그 뜻을 묻지 않는 데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즉, 선초에는 역과 한학에서 경서를 시험 볼 때 한어의 음훈만을 외우게 했던 것이 후대에 오면 그 내용까지 알아야 하게 되었다. 역관을 뽑을 때 四書와 經史는 漢語로 뜻을 읽는 데에 그치지 말고 뒤에 註疏의 깊은 뜻까지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성현(成俔)이 글로 아뢰기를, (중략)

1. 제학(諸學) 중에서 역어(譯語)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買賣)할 때 쓰는 일상어(日常語)도 오히려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년에 제조(提調)들은 거의가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取才)할 때 그 무리에게 맡기므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금후 제조는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1. 역관을 취재(取才)할 때 경서와 사기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도 한어(漢語)의 자훈(字訓)을 묻지 아니하고,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 등의 책은 다만 배송(背誦)하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금후는 사서(四書)와 경사(經史)는 한어로 음(音)을 읽는 뒤에 주소(註疏)의 깊은 뜻을 묻고, 『노걸대』 등의 책은 배송한 뒤에 반복해서 힐난하여 물어야 할 것입니다.⁷⁾

『중종실록』 중종 10년 을해(1515) 11월 14일(병신)의 기사에는 경서의 내용과 같이 수준이 높은 회화에 미치면 중국 사신들과의 말이 막히고 만다는 언급도 있다.

영의정(領議政)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기는 것은 다른 외국의 유례가 아니어서, 모든 주청(奏請)이나 통자(通咨)에 다 이문(吏文)을 쓰고, 또 중국 사신(使臣) 중에 문관(文官)이 오면 말하는 사이에 문자를 쓸 때 음운(音韻)을 잘 알지 못하여 응수할 수 없으므로 어쩔 줄 모르고 눈만 휘둥그레져서 매양 사신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제(子弟)를 보내어 입학시켜서 이문과 한어(漢語)를 잘 배워 와서 서로 가르치게 하면 한음(漢音)과 이문을 잘 아는 자가 반드시 많이 있게 될 것이니, 상의 뜻이 매우 마땅합니다. (중략) 신은 바라건대, 문신 중에서 나이 젊고 침착하여 성질과 도량이 서로 합당한 자를 5~6원(員)이 넘지 않게 가려서 가르치되, 두세 해로 한정해서 가르쳐서, 성취하면 스승과 학생에게 함께 상주어 장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함께 꾸짖어 벌주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방도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면 어찌 한두 사람의 쓸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하고, 정광필(鄭光弼)·송일(宋軼)·노공필(盧公弼)·김진(金詮)·남곤(南袞) 등의 의논도 대략 같았는데, 유순(柳洵)의 의논을 따랐다.⁸⁾

7) 『성종실록』 성종 24년 계축(1493) 9월 1일(임진)조.

“禮曹判書成俔書啓曰：(中略) 一，諸學中譯語尤不精，買賣常語，尙不能通曉，其於天使接待時，傳語不差者有幾人哉？近年提調，類皆不知其語，取才時委諸其徒，不無用情徇私之弊，豈國家設法之意？今後提調以解漢語者任之。一，譯官取才，講論經史，先問深意，不問漢語字訓，至如『老乞大』、『朴通事』等書，只令背誦，不問其義，甚爲不可。今後四書經史，以漢語讀音後，方問註疏深意，『老乞大』等書，背誦後反覆詰問。”

8) 『중종실록』 중종 10년 을해(1515) 11월 14일(병신)조.

“領議政柳洵議曰：‘我國事中朝，非他外國比，凡奏請通咨，皆用吏文。且華使之來，如遇文官，則言語間用文字時，不能通曉音韻，無以酬對，迷罔睚眦，多爲華使所笑。遣子弟入學，通習吏文、漢語而來，轉相師授，則通漢音、解吏文者，必多有之，上旨甚當。(中略) 臣且念，今文臣曉解吏文及漢音者，獨崔世珍一人而已。非此人，則凡爲奏咨文書及應答中朝文移，無獨當入手者，此甚可慮。世珍，今仕承文院，以訓誨兼官、習讀等爲事，然其數甚多，終恐難見的然有成才者也。臣願擇文臣中，年少沈靜，性度相合者，冊過五六員，俾之訓誨，限以數三年有成，則師、

결국 『경서정음』의 편찬 목적은 바로 중국 사신들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조는 역학에 매우 관심이 컸던 임금으로, 조선 전기에는 문신들이 한어를 능통하게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에는 문신들이 한어를 통사들에게 위임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다음은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7월 11일(계유)의 기사이다.

임금이 한학 문신(漢學文臣)의 전강(殿講)에 임시(臨試)하여 거수(居首)한 사람인 학정(學正) 노태관(盧泰觀)과 부정자(副正字) 권항(權抗) 등에게 상전(賞典)을 하사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국가(國家)에 우러가 없는 것은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니, 혹시 사변이 있는 때를 만나게 되어 상역(象譯)은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문관(文官)으로 통사(通事)를 삼는다.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故) 상신(相臣) 이정귀(李廷龜)도 또한 역어(譯語)를 이해하는 것으로써 천사(天使)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이제부터는 문지(門地)는 물론하고 한학(漢學)을 익숙하게 이해하는 자로써 한학교수(漢學教授)에 차임(差任)하도록 하라.” 하였다.⁹⁾

1741년(영조 17년)에는 한학 문신의 殿講에 臨試하여 거수한 사람에게 상전을 하사하고 나서, 유사 시에는 문신도 통사를 삼으며, 門地를 막론하고 漢學을 익숙하게 이해하는 자에게 漢學教授에 差任할 것을 명한다. 뿐만 아니라 한학 문신 전강에 친히 나가 상벌에 관하여 하교하기도 한다.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6월 14일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내가 이르기를,
“심유진(沈有鎭)이 과연 자학(字學)을 전공하였는가?”
하니, 정창순이 아뢰기를,
“신이 심유진과 같이 시원(試院)에 들어갔을 때 자학에 대해 말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설명이 매우 해박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자의(字義)와 자음(字音)은 두 갈래의 서로 다른 분야라서 자학을 한 사람이 자음과 자의를 둘 다 통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음은 모두 정음(正音)이 아니니 이렇게 읽건 저렇게 읽건 간에 다들 필요가 없지만, 화음(華音)의 경우에는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년 전에 조회(朝會)와 각사(各司)의 공좌(公座)에서 모두 향어(鄉語)로 쓴 패(牌)를 금하고 순전히 화음만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 여음(餘音)이 더러 남아 있기도 하는데, 선조께서 이 규례를 복구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하셨다.”
하니, 정창순이 아뢰기를,
“근년에 사신(使臣)의 명을 봉행(奉行)할 때 보니,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고 난 뒤의 일은 전적으로 역관(譯官)들이 조종하기에 달려 있고 세 사신은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나라의

學俱有賞獎，否則俱有責罰，以爲勸懲之方。如是則豈無二三人可用者出乎？”鄭光弼、宋軾、盧公弼、金詮、南袞等議，大略相同，從洵議。”

9) 『영조실록』 영조 17년(1741) 7월 11일(계유) 조.

“上臨試漢學文臣殿講，賜居首人學正盧泰觀，副正字權抗等賞典，仍教曰：“國家難保無虞，或值有事之時，象譯無人，則文官爲通事。壬辰亂時，故相臣李廷龜，亦以曉解譯語，見稱於天使。今後勿論門地，以熟解漢學者，差漢學教授。”

일 중에서 소홀히 하는 점입니다. 국조(國朝)의 고사(故事)에 연소한 문관(文官)에게 한학(漢學)을 익히게 하였는데, 이는 법의 취지가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금 이 규례를 복구한다면 초계문신(抄啓文臣)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이 될 듯하다.” 하였다.¹⁰⁾

또, 정조 7년 계묘(1783) 7월 18일(정미)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수레·벽돌의 사용, 당나귀·양의 목축 등 중국의 문물에 대한 홍양호의 상소문 (중략)
 여섯째는, 화어(華語)를 익혀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한인(漢人)들의 말은 곧 중화(中華)의 정음(正音)입니다. 한번 진(晉)나라 시대에 오호(五胡)들이 서로 어지럽힌 이후부터는 방언(方言)이 자주 변하게 되고 자음(字音)도 또한 위작(僞作)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유사한 것에 따라 진자음(音)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語音)은 가장 중국의 것에 가까웠었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변해(翻解)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通習)하는 어려움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睿智)로 혼자서 신기(神機)를 운용(運用)하여 창조(創造)하신 훈민정음(訓民正音)은 화인(華人)들에게 물어 보더라도 곡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릇 사방의 언어(言語)와 갖가지 구멍에 나오는 소리들을 모두 붓끝으로 그려 낼 수 있게 되는데, 비록 길거리의 아이들이나 향간의 아낙네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능히 통하여 알게 될 수 있는 것이니, 개물성무(開物成務)한 공로는 전대(前代)의 성인들도 밝혀 내지 못한 것을 밝혀 낸 것으로서 천지의 조화(造化)와 서로 가지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한음(漢音)을 변해(翻解)해 나가면 칼을 만난 울이 풀이듯 하여, 이로써 자음(字音)을 맞추게 되고 이로써 성률(聲律)도 맞추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부(四大夫)들은 대부분 화어(華語)를 통달하게 되어, 봉사(奉使)하러 나가거나 영조(迎詔)하게 될 적에 역관(譯官)의 혀를 빌리지 않고도 메아리치듯 주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임진년과 계사년 무렵에 이르러서는 걸령(乞靈)하기도 하고 변무(辨誣)하기도 하는 국가의 큰일들에 있어서 그 힘을 입게 되는 수가 많았으니, 화어를 읽히지 않을 수 없음이 이릅니다.

만근(挽近) 이래로는 한학(漢學)의 강구(講究)가 그만 형식이 되어버려 능히 구두(句讀)를 통하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기 때문에, 사신(使臣)들이 그들과 상대할 적이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입이 다물어지게 되어, 한 마디 말이나 간단한 말에 있어서도 오로지 상서(象胥)들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소위 상서들도 또한 겨우 길거리나 향간의 예사말만 알게 될 뿐이니, 장차 어떻게 심정과 의지를 통하게 되고 변란(辨難)을 다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다행히도 두 나라가 교호(校好)하므로 사신(使臣)들의 일이 방해될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주청(奏請)하고 진변(陳辨)해야 할 일이 있게 된다면 아마도 책임지워 해 갈 수가 없게 될 듯싶으니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닙니다.¹¹⁾

10) 『일성록』 정조 7년 계묘(1783) 6월 14일조.

“予曰, 沈有鎮果以字學爲業乎. 昌順曰, 臣與有鎮, 同入試院, 語及字學, 其說甚多矣. 予曰, 字義與字音爲兩歧, 字學之人, 兼通音義者不易矣. 然我東音, 皆非正音, 彼讀此讀, 不須爭, 至於華音, 則不可不學矣. 我朝數百年前, 朝會及各司公座, 皆有禁鄉語牌, 純用華音, 故今其餘音, 或有存者, 先朝欲復此規而未果矣. 昌順曰, 頃年奉使時見之, 越江以後事, 專在象胥輩操縱, 三使臣充位而已, 此亦國事之疏虞處矣. 國朝故事, 以年少文官習漢學者, 法意甚美矣. 予曰, 今若復此規, 則抄啓文臣輩, 似爲疊役矣.”

11) 『정조실록』 정조 7년 계묘(1783) 7월 18일(정미)조.

“大司憲洪良浩上疏曰: (中略) 六曰肄華語. 夫漢人之語, 卽中華之正音也. 一自晉代以後, 五胡交亂, 方言屢變, 字音亦僞, 而猶可因其似而求其真矣. 我國之音, 取近於中國. 而羅、麗以來, 既無翻解之方, 每患通習之難. 惟我世宗大王, 睿智出天, 獨運神機, 創造訓民正音, 質諸華人, 曲盡微妙. 凡四方之言語, 萬竅之聲籟, 皆可形容於筆端, 雖街童、巷婦, 亦能通曉, 開物成務之功, 可謂發前聖之未發, 而參天地之造化矣. 以此翻出漢音, 迎刃縷解, 於以諧字韻, 於以叶聲律, 故當時士大夫, 多通華語, 奉使迎詔之時, 不假譯舌, 酬答如響. 及至壬、癸之際, 如乞

한학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형식적으로 변하여 역관들마저도 길거리나 향간의 예삿말만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임금이 주도하는 譯學이 조선시대에 꾸준히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2.2 『경서정음』의 편찬 시기

규장각 도서 『경서정음』에는 序文, 跋文, 刊記 및 책의 간행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경서정음』의 편찬에 대한 기록은 『통문관지(通文館志)』 서적(書籍) 속부(續附)에 보인다.

【속록(續錄)】

【경서정음(經書正音)】 [논어 2본, 맹자 3본, 중용·대학 합한 것 1본, 시경 3본, 서경 2본, 춘추 2본이다. 옹정(雍正) 갑인년(甲寅年 1734, 영조 10)에 사역원 관원 이성빈(李聖彬) 등이 재화를 연출하여 주자로 인쇄하여 바쳤다.] ([] 안은 주)

書籍續附

(續)經書正音(論語二本 孟子三本 中庸大學合一本 詩經三本 書經二本 春秋二本 雍正甲寅 院官 李聖彬 等 捐財 鑄字印納)

이를 통해 1734년(영조 10) 『논어』 2본, 『맹자』 3본, 『중용』·『대학』 합본 1본, 『시경』 3본, 『서경』 2본, 『춘추』 2본 등 7종의 경서 총 13본을 사역원의 관원인 이성빈(李聖彬, ?~?)¹²⁾ 등이 재화를 내어 활자로 인쇄하여 바쳤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전하는 규장각 소장 『대학정음』<奎3291>과 『춘추정음』<奎1643>, 『서전정음』<奎1645-v.1-2> 등에 ‘雍正十三(1735)年十月十六日 內賜弘文館.’이라는 內賜記가 있어서 1734년에 초판본을 만들어 1735년(영조 11)에 반사(頒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역학서를 역관이 연재하여 임금께 바친 후 전체를 찍어내는 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생각할 때, 1735년에 각각의 『경서정음』 활자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¹³⁾

『經書正音』의 重刊은 1784년(正祖 8)에 목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경서정음』<奎1674> 제10책 『春秋正音』의 卷末에 “甲辰(1784)冬重刊通文館藏板”이라는 刊記와 참여한

靈辨誣, 國之大事, 多賴其力, 華語之不可不習也如此. 挽近以來, 漢學之講, 便成文具, 能通句讀者絕少, 故使臣之與彼相對也, 耳聽而口噤, 片言單辭, 專仗象胥, 所謂象胥, 亦堇解街巷例話而已, 將何以通情志, 盡辨難乎? 今幸兩國交好, 使事無阻, 而設有奏請陳辨之事, 則恐無以責辦, 非細憂也.”

12) 『경서정음』의 간행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한 이성빈에 대하여 한학관(漢學官)이나 청학관(淸學官) 등 구체적인 전공 없이 원관(院官)으로만 소개되어 있으므로 그는 사역원의 행정을 맡았던 관리로 추정된다. 『역과방목』에도 기록이 보이지 않고, 『만가보(萬家譜)』의 제3책 덕수이씨보(德水李氏譜)에서 조선후기 문신 이수해(李壽海, 1693-?)의 제3자로 나와 있으므로 사역원 역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왜학서인 『捷解新語』의 경우에도, 2차 개수본을 최학명이 사제로 인쇄하여 임금께 바친 1년 후에 전체를 완성하였다.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重刊에 참여한 人物은 檢察官 洪命福, 校正官 玄卜厚·金益瑞, 書寫官 金亨瑞·李師夏, 監印官 金漢泰이다.

초간본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들은 각각 따로 간행되었던 활자본을 모아 복각하면서 ‘經書正音’이라는 하나의 표지서명을 붙인 것이다.

이밖에도 『일성록(日省錄)』 정조 24년(1800) 경신 4월 13일(乙未)의 기사 내용으로 보아, 1800년에 인출한 『周易正音』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역원이 아뢰기를,

“전강(殿講)할 때 쓰는 사서이경(四書二經)과 『춘추정음』은 모두 판본이 있지만 『주역정음(周易正音)』은 아직 판본이 없었습니다. 한학(漢學)을 가르치는 역관(譯官) 김익서(金益瑞)가 자원하여 새긴 판본으로 『주역정음』 및 사서이경과 『춘추정음』을 모두 인출하여 진상(進上)합니다. 그런데 무릇 강서(講書)에 쓸 책자를 간행한 경우 1본(本)을 내각에 보내 입계(入啓)한 뒤에야 비로소 초기(草記)로 상(賞)을 청하도록 일찍이 경술년(1790, 정조 14)에 정식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역정음』을 사재(私財)를 들여 판본을 새긴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논상(論賞)하는 방도가 있어야 하니, 근래의 예(例)에 따라 가자(加資)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¹⁴⁾

이 내용을 통하여 『周易正音』은 1800년에야 역관 김익서(金益瑞)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규장각 소장의 활자본(초간본) 가운데 『주역정음』이 없는 것은 이 책이 1800년에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3. 奎章閣 소장 『經書正音』의 書誌

3.1 규장각 소장 『經書正音』의 書誌

규장각에 소장된 『경서정음』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경서정음』의 현황을 보면 『경서정음』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것이 3질 있고, 활자본으로 각각 존재하는 판본과 목판본으로 따로 소장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弘齋, 承華藏圭’ 등 정조의 장서인이 찍힌 책은 正祖가 열람한 도서이다.

14) 『일성록(日省錄)』 정조 24년(1800) 경신 4월 13일(乙未)조.

“綱: 司譯院進新印四書二經春秋正音.

目: 該院啓言. 殿講時所用四書二經, 春秋正音, 俱有板本, 而周易正音尙無板本. 漢學教誨譯官金益瑞, 自願刊板周易正音及四書二經, 春秋正音, 並爲印出進上. 而凡講書刊冊者一本, 送于內閣, 入啓然後, 始爲草記請賞事, 曾有庚戌定式. 今此周易正音之費財刊板, 合有論賞之道, 請依近例施以加資之典. 允之.”

<표 2> 규장각 소장 『經書正音』

	초간본(목활자본)	중간본 (목판본/단행본)	經書正音(목판본) (奎1674, 奎3403, 奎4392)	備考
周易正音			1-3책 32.2×20.8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3.3×16cm, 有界, 10行 20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奎1674, 奎3403) 小倉文庫 (舊) L42953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4.3冊(48 : 49 : 27, 15張). 木版本.
書傳正音	奎1645, 奎3698, 奎3906(4권 2책) 32.9×21.1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5.3×16.5cm, 有界,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내사기: 雍正十三年(1735)十月六日 內賜弘文館(奎1645)		4-5책	宣賜之記, 弘文館(奎 1645). 學部圖書, 編輯局保管(奎 3906) 小倉文庫 (舊) L42951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4.2冊(36, 36 : 36, 40張). 木版本.
詩傳正音	奎2860, 奎2861, 奎3908(7권 3책) 32×20.6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2.5×16.3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6-8책	承華藏主, 弘齋(奎2860). 學部圖書, 編輯局保管(奎3908) 小倉文庫 (舊) L42954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7.3冊(35, 39 : 29, 33 : 23, 20, 21張). 木版本.
春秋正音	一簣古 181.1-C472j 奎1642, 奎1643, 奎1644 (4권 2책) 32×20.4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5.5×16.4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古 1326-1 (4권 2책) 33.3×21.5cm.	9-10책	大走, 卞昌和氏, 密陽 (一簣古 181.1-C472j) 小倉文庫 (舊) L42950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4.2冊(27, 26 : 27, 26張). 木版本.
大學正音	奎1764, 奎3291(1책) 32.9×21.1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5.3×16.5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내사기: 雍正十三(1735)年十月 十六日內賜弘文館...(奎3291)		11책 전반	宣賜之記, 弘文館(奎 3291). 弘齋, 承華藏 (奎 1764) 小倉文庫 (舊) L42949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1冊(12, 23張). 木版本.
中庸正音	奎1765, 奎3402(1책) 32.8×21.2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6.3×16.4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11책 후반	承華藏主, 弘齋 (奎1765) 承華藏主, 弘齋, 學部圖書, 編輯局保管(奎3402)

	초간본(목활자본)	중간본 (목판본/단행본)	經書正音(목판본) (奎1674, 奎3403, 奎4392)	備考
論語正音	奎1606, 奎(3649) (4권 2책) 33×21.1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5×16.5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내사기: 雍正十三(1735)年 十月十六日內賜弘文館		12-13책	承華藏圭, 弘齋 (奎1606) 宣賜之記, 弘齋 (奎3649) 梨花女大 2권2책 小倉文庫 (舊) L42952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4.2册(26, 27 : 28, 24張). 木版本.
孟子正音	奎1655, 奎3907 33×21.1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5.5×16.5cm, 10行 20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규668(6권3책) 34.6×23cm 匡郭 四周單邊, 半郭: 24.4×16.6cm, 10行 20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14-16책	宣賜之記, 弘文館(奎1655) 學部圖書, 弘齋, 承華藏圭(奎3907) 帝室圖書之章(奎668) 小倉文庫 (舊) L42955 [英祖10年(1734)刊木活字本 重刊本.] 6.3册(30, 43 : 43, 29 : 31, 29張). 木版本.

3.2 『경서정음』의 活字 - 經書正音字

규장각본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서정음』의 활자는 전술한 『통문관지』의 기록으로 미루어, 1734년에 李聖彬 등의 譯官이 『대학』·『중용』·『논어』·『맹자』 등 四書와 『서전』·『시전』·『춘추』 등 三經, 經學書의 經書 原文에 대한 중국의 바른 음을 표기하여 찍어내고자 스스로 경비를 거두어 만든 것이다. 그 중 원문 한자를 찍기 위한 활자를 ‘經書正音字’, 원문 정음을 표기한 한글을 찍기 위한 활자를 ‘經書正音한글자’라 부르고 이들 활자로 찍은 책을 ‘經書正音字本’이라 부르고 있다.

정조대의 문헌인 『西庫藏書錄』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어 ‘鑄’자를 통해 금속활자로 볼 수도 있으나 전래되고 있는 印本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면 목활자이다. 이 무렵에는 목활자를 ‘木鑄字’라고도 일컫은 데서 그와 같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진 헤정한 필서체의 목활자이다.

春秋正音 一件二册 鑄
書傳正音 二件各二册 鑄
詩傳正音 二件各三册 鑄
論語正音 一件二册 鑄
孟子正音 一件三册 鑄
中庸正音 二件各一册 鑄
大學正音 一件一册 鑄

이 책들이 역관의 돈을 들여 인쇄가 되긴 하였으나 어디서 행해졌는가는 『통문관지』에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西序書目』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사역원에서 간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西庫書目目錄』 장서각 소장 자료 K2-4963(1886-1895)

經部	
總經	經書正音 三件 各十六卷 譯院刊印
書	書經正音 二件 各二卷 譯院刊印
詩	詩經正音 二件 各三卷 譯院刊印
春秋	春秋正音 二卷 譯院刊印
四書	大學正音 一卷 譯院刊印
	論語正音 二卷 譯院刊印
	中庸正音 二件 各一卷 譯院刊印
	孟子正音 二件 各三卷 譯院刊印

4. 『經書正音』의 語音

이 책은 기존 경서(經書) 정문(正文)의 한자 밑에 한글로 한어음(漢語音)만을 달아 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언어학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한어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어원문의 각 한자 밑에 한글로 左右 漢語音을 표기하는 방식은 사역원 역학서에서는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이후의 漢學書들에도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한글 표기 중 왼쪽은 한어 규범음인 ‘正音’, 오른쪽은 한어 현실음인 ‘俗音’으로 본다.

『經書正音』의 左右音 표기를 살펴보면 먼저 좌측음은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의 正音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韻尾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인다. 즉, 入聲韻尾와 支紙寘 3韻의 終聲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經書正音』의 좌측음에 나타나는 入聲韻尾와 支紙寘 3韻의 終聲 표기는 오히려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解』의 俗音 표기와 가깝다.

다른 한학서와 비교해 보아도 18세기 간행의 『노걸대언해』(平安監營重刊本)(1745序), 『박통사신석언해』(1765), 『중간노걸대언해』(1795 이후) 등의 좌측음과 일치한다. 『經書正音』의 우측음은 『老乞大諺解』(1670)의 우측음과 일치하는데, 이 책이 간행된 시기의 한어음을 반영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박통사신석언해』나 『중간노걸대언해』가 구개음화, 撮口呼에서의 변화, 日母字에서의 변화, 山攝系 韻母의 변화 등 17, 8세기에 북방 한어에서 일어난 음운변화를 우측음에서 생생히 반영하고 있는 반면 『經書正音』의 우측음은 초간본은 물론 1784년 간행의 중간본도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經書正音』의 우측음은 ‘今俗音’이라고 보다는 전시대의 漢語 현실음인 俗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한어음운사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어음을 표기하는 한글 전사는 좌측음은 물론 우측음까지도 『洪武正韻譯訓』(1455)에서 수립된 한글 전사 체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실음인 우측음의 경우에도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나 ‘·, ˙’ 소실과 같은 17, 8세기 한국어에서 일어난 음운변화를 한글 전사를 통해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어음 표기가 외국어 전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수 문자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한국어에서 음운변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漢語 전사에 곧바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經書正音』의 우측음 전사체계는 『洪武正韻譯訓』 및 이를 계승한 16세기 간행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의 聲母 및 韻母 전사 체계 음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인한(2015)에서 일본 오구라문고의 『大學·中庸正音』의 한자음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표 3> 성모(聲母) 체계(좌측음/우측음) (권인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음(牙音): 見ㄱ/ㄱ, 溪ㅋ/ㅋ, 羣ㄲ/ㄲ, 疑ㅇ/ㅇ ▪ 설음(舌音): 端ㄷ/ㄷ, 透ㅌ/ㅌ, 定ㄸ/ㄸ, 泥ㄴ/ㄴ, 來ㄹ/ㄹ ▪ 순음(唇音): 幫ㅍ/ㅍ, 滂ㅍ/ㅍ, 並ㅂ/ㅂ, 明ㅁ/ㅁ 非ㅍ/ㅍ, 奉ㅍ/ㅍ, 微ㅁ/w ▪ 치음(齒音): 精ㅈ/ㅈ, 淸ㅊ/ㅊ, 從ㅉ/ㅉ, 心ㅅ/ㅅ, 邪ㅆ/ㅆ, 日 ㄷ / ㄷ 照ㅈ/ㅈ, 穿ㅊ/ㅊ, 牀ㅉ/ㅉ, 審ㅅ/ㅅ, 船ㅆ/ㅆ ▪ 후음(喉音): 影ㅇ/ㅇ, 曉ㅎ/ㅎ, 匣ㅎ/ㅎ, 喻ㅇ/ㅇ

위에서 보듯이 좌측음은 31성모를 보임으로써 『洪武正韻譯訓』(1455) 또는 『四聲通解』 정음의 체계와 일치하는 반면, 우측음은 16성모를 보임으로써 『老乞大諺解』(1670)나 『譯語類解』(1690?)의 우측음 체계와 일치한다.

<표 4> 운모체계(좌측음/우측음) (권인한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支紙寘(지지치) 3운: 知지/지, 之지/즈, 子중/즈, 此중/츠 而심/술, 爾심/술, 二심/술 ▪ 侵覃鹽(침담염) 3운: 金김/긴, 審심/신, 南남/난, 監감/견, 嚴엄/연 ▪ 豪肴宵(호효소) 3운: 道땡/땡, 好향/향, 教갡/갡, 矯경/갡, 小설/쇼 ▪ 입성운: 法방/박 淸링/이, 日일/시, 必빙/비, 竊경/쳐, 桀뵤/겨, 嬴/워 薄뵤/보, 樂달/로, 學향/효, 琢잡/조, 德땡/더, 赫횡/허, 國경/귀, 極깁/기
--

운모체계에 있어서도 좌측음은 『四聲通解』의 속음·금속음(今俗音) 체계와 일치하는 반면, 우측음은 『老乞大諺解』(1670)나 『譯語類解』(1690?)의 우측음 체계와 일치한다. 한편, 성조 표시가 전혀 없는 것도 『老乞大諺解』(1670)나 『譯語類解』(1690?)의 체계와 일치한다. 여타의 『경서정음』들도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서정음』의 우측음이 편찬 당시의 금속음이라기보다는 전시대(前時代), 특히 『老乞大諺解』(1670)의 우측음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경서정음』의 우측음이 편찬 당시 한어에서 일어난 구개음화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한어음운사 자료로서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서정음』류가 역과 수험생들의 한음 실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또 그런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편찬된 것이라면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부터 유통되었을 원고본 형태의 한음 교육용 교재가 영조조에 와서 비로소 수정 없이 간행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시 한어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경서정음』의 편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현실음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5. 結 語

이상의 논의에서 奎章閣 소장 『경서정음』의 서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편찬 목적, 어음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서정음』은 역관들이 중국의 사신이나 지식인들을 대할 때 정확한 『經書』의 정확한 통역을 위하여 『경서』의 중국어음을 하나하나 익히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다. 실제로 사역원의 譯生들은 譯科 漢學에서 經書의 정확한 음을 구사하는 시험을 치루었다. 선초에는 문관들도 중국어음을 잘 구사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에 대한 학습이 소홀해지자 영·정조에 이르러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한 방안으로 교재를 편찬한 것이 바로 『經書正音』이었다. 남아있는 기록을 통하여 영조대에 사역원에서 활자로 된 『경서정음』이 먼저 간행되었고, 정조대에 이를 다시 복각한 목판본이 印刊되었다. 특히 『周易正音』은 1800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므로 목판본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로이 밝혔다.

『경서정음』의 언어학적 가치는 당대의 현실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어음운사에 큰 기여를 할 수는 없지만 간행 시기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諸漢學書의 상대적인 음운 비교를 위한 자료로서는 쓰일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西庫書目目錄』 藏書閣 소장본(K2-4963) (1886-1895).
『西庫藏書錄』 奎章閣 소장본(ㄱ7717) (1865-1866).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通文館志』 경인문화사 영인본.
『국역 통문관지』 전4권 세종기념사업회, 1998.
- 강신향. 「韓漢음운사 연구」. 서울: 태학사, 2003.
강신향. “맹자정음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권인한. 「중세 한국한자음의 분석적 연구(자료편)」. 서울: 박문사, 2009.
권인한. “대학·중용정음(大學·中庸正音)해제.” 서울: 고려대해외한국학센터, 2015.
서울대학교규장각 편. 「노걸대·노걸대언해」(규장각자료총서 어학편 1). 서울: 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신용권. “경서정음 해제.” 『규장각소장어문학자료』. 서울: 태학사, 2001.
윤병태. “經書正音字考.” 『도협월보』 Vol.15. No.11(한국도서관협회, 1974). 20-24.
鄭亨愚·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상·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국학연구총서 4. 서울: 보경문화사, 1995.
정승혜. “한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중언어학』 21호(2002). 286-312
정승혜. “한국에서의 漢語 교육과 교재의 역사적 개관.” 『국어사연구』 4호(2004). 123-171.
정승혜. “『첩해신어』 제2차 개수본의 간행연대에 대하여.” 『일본문화연구』 21호(2007). 167-188.
정승혜. “『捷解新語』의 編纂者들.” 『역학과 역학서』 6집(2015. 12). 69-102.
정승혜. “司譯院.” 『한양의 관청』. 서울: 글항아리, 2015.

